

大法院判例를 통해 본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

-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의 代表의 大法院 判例를.....○
-모아 分析해 보았다.<編 輯 者 註>.....○

◎ 第 10 回 ◎

登錄 實用新案의 範圍

登錄 實用新案의 權利範圍의 判斷基準

어느 考案이 다른 登錄된 實用新案의 權利範圍에 屬하느냐를 比較하려면 각 物品의 形狀構造 또는 組合等 物品의 型에 關한 技術的 考案뿐 아니라 그 考案의 使用價值, 利用目的等 그 作用效果의 點에 對하여도 比較 考察하여야 한다.

※ 大法院(第1部) 1965. 12. 7 宣告, 65 헌 16 判決
(登録實用新案, 權利範圍確認, 1965. 8. 24, 1964 抗告
審判 第12號 審決)

原審決에 依하면 原審은 被審判請求人이 登錄한 本件 登錄 第1236號 實用新案이 “漂白한 廉紙, 廉麻, 石線層 染色한 톱밥 小量의 人造다이야, 糊液을 混練한 纖維材料 1을 台紙 2에 均一하게 塗着함을 特徵으로 하는 文化壁材”라는 事實과 原審決에서 말하는 (가)號說明書의 纖維性壁材가 “人造纖維, 廉品纖維等을 主原料로 하여 이에 팔프의 雲母片을 混加하고 化學糊料를 配合하여 上塗用으로 塗着하는 纖維性壁材”라는 事實을 認定한 다음 위의 兩壁材가 人造纖維, 廉物纖維等 纖維質이 壁材의 主原料가 된 것과 糊料를 組合하였다는 共通點은 認定되나 文化壁材는 톱밥과 人造石을 混加하는 反面 纖維質 壁材에도 팔프와 雲母片을 混加하므로 그 技術的 差異가 있다 할 것이고 纖維材料 1을 台紙 2에 均一하게 塗着함을 特徵으로 하는 文化壁材

의 構造로 되어 있는 登錄 第1236號 實用新案의 權利範圍는 纖維性壁材의 狀態의 物品에 미치지 않는다는 意旨로 判示하였다.

그러나 實用新案은 物品에 關한 形의 考案으로서 有形의 物品에 具體化된 技術的 思想의 創作이라 할 것이요, 그 考案은 物品의 形狀構造組合이라는 媒介를 通하여 物品의 使用價值를 높이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考案이 다른 登錄된 實用新案의 權利範圍에 屬하느냐를 比較하려면 각 物品의 形狀構造 또는 組合等 物品의 型에 關한 技術的 考案뿐 아니라 그 考案의 使用價值 利用目的等 그 作用效果의 點에 對하여도 比較 考案하여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原審이 位에서 말한 바와 같은 技術差異가 있고 特徵이 있다고 할 뿐 그 作用效果에 있어서 어떠한 가를 審理 判斷하지 아니하고 (가)號 說明書 記載의 纖維性壁材는 登錄 第1236號 實用新案의 權利範圍에 屬하지 아니한다고 判斷하였음은 實用新案과 그 權利範圍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違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登錄 實用新案의 權利範圍 確認의 對象

製品의 比較判斷은 잘못

實用新案의 權利範圍를 審判함에 있어서는 그 登錄明細書와 圖面에 依한 것이고 兩者的 製品을 比較判斷하는 것은 잘못이다.

※ 大法院(第1部) 1969. 2. 25 宣告, 68 헌 42 判決

(登録實用新案権利範圍確認, 1963. 10. 29. 1962. 抗告審判 第177號 審決)

實用新案의 権利範圍를 審判함에 있어서는 그 登錄明細書와 圖面에 依하여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兩者的 製品을 比較하여 그 部品의 直徑 또는 面積의 大小의 差異點에 着眼하고 登錄明細書에 再生이란 말이 隊음에도 不拘하고 再生에 關한 考案으로 볼 수 있다는 趨旨로 判斷하였음은 質문이라 할 것이고, 이는 審決의 結果에 影響을 미쳤다 할 것이다.

(가)號와 (나)號의 非同一性

被審判請求人이 實施한 것은 (가)號가 아닌 (나)號이고 (가)號와 (나)號는 그 技術思想이 다른 考案이므로 本件考案과 (가)號를 對比할 것 없이 本件은 審判實益이 없는 不適法한 請求인 것이다.

※ 大法院 1980. 10. 14 宣告 79호 81判決(登録實用新案 権利範圍確認 1979. 8. 31. 1978 抗告審判(당)第109號 審決).

原審決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被審判請求人은 그 審決時 記載와 같이 審判請求人이 主張하는 (가)號圖面의 벤치레이다 軸受筒을 製造販賣 其他 取扱하지 않고 있으며 被審判請求人이 製造販賣하고 있는 벤치레이다 軸受筒은 그 審決서 記載 (나)號의 그것이라는事實 그 (가)號 (나)號는 서로 相異한 別個의 것이라는事實 및 被審判請求人은 위 (가)號의 벤치레이다 軸受筒을 製造販賣 其他 取扱한 일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는事實을 確定하고 더 나아가 위 (가)號와 審判請求人们이 登錄한 實用新案 第12465號에 關한 比較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號는 위 實用新案 登錄 第12465號의 権利範圍에 屬한다는 審判請求人의 本件 審判請求를 排斥하고 있는바 原審이 위와 같은措置를 取함에

있어 거친證據의 取捨過程을 記錄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이 審理未盡이나 採證法則을 違反한 違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記錄에 依하면 審判請求人은 最初에 提出한 (가)號圖面은 不分明하다고 하며 나중에 「審判事件補正書」에 依하여 다시 明確한 (가)號圖面을 提出하였으며 被審判請求人는 이 새로 提出된 (가)號圖面에 依한 考案을 自 實施한다고 自認하였다 할 수 없어 結局 위와 같은 原審決에 所論과 같이 審理遺脫의 違法도 없다할 것이므로 論旨는 모두 理由없다.

實用新案権의 範圍에서 公知事由는 排除

實用新案權는 新規性이 있는 技術的 考案에 賦與되는 것이며, 그의 具體的 範圍를 定함에 있어서는 出願當時의 技術的 水準이 無効審判의 有無에 拘碍됨이 없이 考慮되어야 한다.

※ 大法院 1964. 10. 22宣告, 63호 45判決(登録實用新案 権利範圍確認 1963. 11. 6. 1962 抗告審判 第122號 審決)

實用新案権의 範圍에는 公知事由도 包含

假使, 審判請求人の 實用新案權의 構成要素의 一部에 公知共用된 部分이 있다 하여도 이미 無効審判請求期間이 經過됨으로써 그 無効를 达する 수 없는 狀態에 있는 以上 公知共用 云云으로서 實用新案權을 無視할 수 없다.

※ 大法院 1964. 10. 22宣告, 63호 45判決 (登録實用新案権利範圍確認 1963. 11. 6. 1962 抗告審判 第122號 審決) <계속>

(案) 特許廳 複寫業務 代行 (内)

本會에서는 對民서비스業務를 擴大하여 會員을 비롯한 資料利用者에 對한 便宜를 提供하고 效率的인 業務遂行을 하고자 特許廳 閱覽室의 特許文獻 複寫業務를 代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同 複寫手數料 徵收方法을 아래와 같이 變更 實施하오니 業務에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手數料徵收方法 : 現金收納(수입인지는 받지 않습니다)

◎ 金 額 : 枚當 100원(從前과 同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研修部 (555-6815)로 문의바랍니다